

제16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0. 9. 9.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0년 9월 9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손 병 두 부위원장

이 성 호 위 원

최 훈 위 원

윤 석 현 위 원

이 승 현 위 원

위 성 백 위 원

심 영 위 원

4. 회의경과

(15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0년도 제14차 및 제15차 금융위 회의록, 제3차부터 제5차 금융위 서면회의 회의록과 2020년도 제15차 및 제16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20년도 제14차 및 제15차 금융위 회의록, 제3차부터 제5차 금융위 서면회의 회의록과 2020년도 제15차 및 제16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차기회의에 보고

2) 의결안건 심의

의결안건 제306호 『공인회계사 ○○○에 대한 징계의결안』을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공인회계사 ○○○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하여 직무일부정지 6월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307호 『공인회계사 ○○○에 대한 징계의결안』을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공인회계사 ○○○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하여 직무정지 1년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08호 『○○○(주)(舊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가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안으로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있는 임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09호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장이 내용을 설명함

※ 경남은행이 개인신용정보 등록시 정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0호 『롯데카드(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롯데카드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오등록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1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제312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제313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제314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제315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제316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현행 신용등급제를 신용점수제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

○ (위원) 신용평가체계를 점수제로 전환하면 금융기관이나 소비자에게 모두 좋을 것 같음. 그런데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신용평가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내용들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 홍보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 (보고자) 현재 개별 CB社에서도 신용평점의 평가요소나 상

승·하락 요인을 일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고 있고 신용 관리방법도 홍보하고 있음. 또한 금감원에서도 '신용등급 관리 10계명'을 통해서 관리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음. 개인신용 평가 T/F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하고 신용사회에서 개인의 신용등급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7호 『현대캐피탈(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318호 『엔에이치농협캐피탈(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319호 『신한캐피탈(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현대캐피탈(주) 등 3개사가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시정을 명하는 내용

○ (위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에 대한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의 징계에 차별이 있음.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단 한번만 최고이자율을 위반해도 '영업정지'의 조치가 들어가는데, 지금 3개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시정명령'만 나가게 됨. 원래 대부업자에 대해서 더 강화된 조치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나 이런 제재조치 간의 차별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법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보고자)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최고이자율을 위반하면 바로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몇 차례 금융위에서도 조치한 사례가 있음. 하지만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현행법상 위반을 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부과한 이후에 그것을 불이행할 경우에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래서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최고이자율과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관·임직원 제재를 먼저 부과하고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고 영업정지까지 가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위원) 법 개정은 입법론적으로 하고 여기 3개社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캐피탈社들은 그렇게 위반하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도 모두 최고이자율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려주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음.
- (보고자) 협회를 통해서 재차 강화된 지도를 하도록 하겠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0호 『현대캐피탈(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 제321호 『케이비캐피탈(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현대캐피탈(주) 및 케이비캐피탈(주)이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하여 시정을 명하는 내용

- (위원) 초과 중개수수료에 대한 환수조치는 필요 없는지?
- (보고자) 앞 건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인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그것을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법령상 명확히 되어 있는데, 중개수수료 초과지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초과 지급된 부분을 무효화 한다는 내용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음. 또 중개수수료를 분담하는 구조가 중개모집인에서 딜러로 분담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집인한테 전부 환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미 기지급을 받은 중개모집인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50%가 폐업한 상태임. 그리고 나머지 50%도 상당히 영세해서 그 자금을 환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위원) 재발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지?
- (보고자) 동 사안도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자체가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 위반시에는 기관이나 임직원 제재를 하고, 누진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음.
- (보고자) 참고로 중개수수료 초과지급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전社 전체 자율 T/F를 구성해서 중고차대출 영업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에 중개수수료 산출시 해당금액이 초과되면 그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이미 T/F에 포함했음. 각 캐피탈社들이 이 부분을 포함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료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출중개수수료 산정상의 오류로 인한 위법행위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2호 『(주)우리카드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우리카드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현행법상으로는 카드사가 해외 자회사에 대한 투자지
분을 늘린 것이 위반사항인데, 은행과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에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가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입법적으로 업종 간에 차이가 있는 규제 형태로 되어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보고자) 이 건은 (주)우리카드의 해외 영업확대를 위한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것으로 대주주인 우리은행에의 자금지원
성격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됨.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이
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발생한 문제인데 은행법 등은 동
일한 사례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도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타법을 감안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3호 『(대전)구즉신용협동조합과 (대전)충남대학교 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상호금융 감독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전)구즉신용협동조합의 (대전)충남대학교신용협동조합 흡수 합병을 승인하는 내용

○ (위원) 충남대신협이 구즉신협과 합병하면 경영정상화와 부실은 치유가 되는지? 그리고 예금자보호기금에서 합병자금 약 28억 원을 지원하여 1억 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만약 합병 후 부실이 되면 또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 (보고자)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손실금액의 90%를 지원해 주고 충남대신협의 조합원들은 그대로 옮겨감. 충남대신협 교직원들과 가족들이 신협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그리고 지금까지 합병자금 지원으로 합병한 조합이 퇴출되거나 피합병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예금보험공사와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인 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신협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조합들은 각 중앙회에서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4호 『서민금융진흥원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 변경(안)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서민금융 공급계획 확대 및 2020년도 3차 추경예산 추가 내용을 서민금융진흥원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5호 『신용보증기금 2020년도 업무계획 변경(안)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추경으로 확대된 보증총량을 반영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업무계획을 변경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6호 『(주)얼바인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시 승인절차를 미이행 하고 전문인력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주)얼바인투자자문에게 과태료, 과징금 및 업무 전부정지를, 전직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7호 『케이비증권(주)의 (가칭)㈜잠자리컴퍼니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케이비증권(주)이 신규 설립되는 핀테크업체인 (가칭)㈜잠자리 컴퍼니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신청한 내용에 대해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8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찰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감원 직원이 감찰실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금융위·금감원이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금감원 모두 각별히 유념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9호 『(주)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한국씨티은행이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위반 등이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30호 『(대구)다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 제331호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구)다사농업협동조합 및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직원에 대한 신분제재를 하고자 하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32호 『(주)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IT·핀테크전략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우리은행 직원들이 장기 미사용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 입법론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2가지 사안임.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 보면 첫 번째가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사항이고, 제2항에서 안전성확보의무를 다루고 있는데, 두 규정을 별도로 적용할 수도 있고 달리 적용할 수도 있는데,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단속적 규정의 성격보다는 주의적 규정의 형식이고,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의 신임관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규정으로 보입니다만 현행 법상으로는 이것이 단속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되어 있음. 이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것들이 일반적인 금융거래 당사자 간의 신임관계에 관한 부분이라면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상으로는 이 부분이 공법영역으로 들어와서 행정조치의 대상으로 되고 있음. 그래서 2개로 나눠서 했습니다마는 안전성확보의무 조항만으로도 조치가 가능했던 사안인데 공법영역의 선관주의의무로 인한 부분까지 끌어들이는 부분은 입법적으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향후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될 때는 이 부분을 고려했으면 함.

- (보고자) 「전자금융거래법」과 비견되는 「자본시장법」의 경우에는 제37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하고 그 이후에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와 같은 것은 어떤 해석의 기준이 되는 해석원리로만 작용할 뿐이지, 이번에 제재 대상 조항이 됐던 선관주의의무와 같이 직접적인 제재 근거 조항으로 작용하지는 않음. 다만, 이렇게 고객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이러한 조항

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됨. 특히 이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전문적·기술적 사항들을 고려할 때 입법으로 포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영역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했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 입법론적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는 추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 (위원) 저희들이 고민해 오던 이슈인데 결국 감독규정이나 하위 규정에서 위반형태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임.
- (위원) 이것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굉장히 컸고 금감원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비해 제재 수준은 실효성 면에서 부족한 것 같음. 동일 검사라는 개념 때문에 기관경고가 실효성 있게 나가지 못하는 상황임. 그래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제도개선의 차원에서 실효성 측면을 다시 한 번 살펴주시면 좋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0년도 금융위원회 제16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6시 23분 폐회)